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8

발의연월일: 2020. 8. 6.

발 의 자:이원택・김경만・유동수

양정숙 · 장경태 · 전용기

한병도 · 신정훈 · 양양영

윤재갑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의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사업이 국가 및 공공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 감 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투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여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5년간은 100퍼센트, 그 후 3년간은 75퍼센트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121조의33 신설).
- 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안 제121조제3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11(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3(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라한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 2. 제1호의 기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75
- 3. 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 의 50
-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 2. 해당 과세연도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 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 제121조의34(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 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21조의3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3 또는 제121조의34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해당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3. 해당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 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을 "제 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22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2 2제2항"을 각각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 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새만금투자진흥지구 관세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21조의34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새만금투자진흥지구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한 적용례) 제121조의 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 <신 설></u> | 제5장의1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 |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
| <u><신 설></u> | 제121조의33(새만금투자진흥지구 |
| |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
| | <u>감면) ① 「새만금사업 추진</u> |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 |
| | 조의5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 |
| | <u> 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u>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라 한다) |
| | 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입주 |
| | 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 |
| | 장에서 사업(이하 이 장에서 |
| |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 |
| | 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 |
| | 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 |
| | 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
| |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 |
| | 세를 감면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 |
| |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
| |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 |
| | 인세 또는 소득세에 다음 각 |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 1.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 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 2. 제1호의 기간 이후부터 3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100분의 75
- 3. 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100분의 50
-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 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 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 라 한다)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

계액의 100분의 50

- 2. 해당 과세연도의 새만금투자 진흥지구 사업장(이하 이 조 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 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 우에는 2천만원]
-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 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

<신 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4(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 세의 면제) ① 새만금투자진흥 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30 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 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 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신 설>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35(새만금투자진홍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4에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 및관세를 추정한다.

-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해당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 주기업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3. 해당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 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 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 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 의33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 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33제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③ (현행과 같음)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략)
 -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 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 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 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 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제1항·제2항, 제99조의11제1 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 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 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 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 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 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 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 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 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 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 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 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 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 |
|-----------------------|
| 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
|------------------------------|
|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 |
| 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 |
| 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 |
| 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 |
| 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 |
| 의6제1항·제2항, 제99조의11제1 |
| 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 |
| 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 |
| 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
| 제121조의21제2항, <u>제121조의22</u> |
| <u>제2항</u> 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 |
| 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 |
| 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
|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
| 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
| 적용받을 수 있다. |
| (3) (3) 7b) |

⑥ ~ ⑩ (생 략)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제 배제) ① (생 략)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 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

| ⑤ |
|--------------------|
| |
| |
| |
| |
| |
| |
| |
| |
| |
| 제121조의22 |
| 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
| |
| |
| |
| |
| |
| ⑥ ~ ⑩ (현행과 같음) |
| ∥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
| 배제)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
| |
| |

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 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 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 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 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 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 2항, 제121조의21제2항, <u>제121</u> 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 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 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 <u>제121</u> |
|----------------------|
| 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 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 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 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수 대121조의21제2항 수 나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 <u>제121</u> |
|----------------------|
| 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
| <u>.</u>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u>제12</u> 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 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 1. ~ 3. (현행과 같음)